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6
------	-----

2023.03.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3일, 서상열 의원(찬성자 3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3.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II.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김영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운영사항 중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 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서 ‘18세 이하인

자’ 와 ‘65세 이상인 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의 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 · 청소년 및 노약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8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호가목)

나.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신설함 (안 제10조제1호가목, 안 제10조제2호가목)

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함 (안 제10조제2호나목)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18세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임.

나. 시립체육시설의 운영현황

- 서울시는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과 위탁대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총 1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시설별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 서울시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음.
- 잠실 주경기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잠실 마이스 단지 사업개발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바, 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시립체육시설 현황>

운영 형태	소관부서	시설명/위탁기관(기간)	
직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목동	주경기장
			야구장
기타	구의 야구공원		
	신월 야구공원		
위탁·대행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야구장	(주)LG스포츠(주)두산베어스 ('23.1.1~'25.12.31.)
		목동빙상장	(주)와이키키 신사점 ('23.1.1~'25.12.31.)
		효창운동장	서울특별시축구협회 ('23.1.1~'25.12.31.)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시설공단 ('19.1.1~'23.12.31)
		장충체육관	서울시설공단 ('20.1.1~'24.12.31)
		고척스카이돔	서울시설공단 ('21.1.1~'25.12.31)
	체육진흥과	산악문화센터	(사)박영석 산악문화진흥회 ('23.1.1~'25.12.31)
기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제2수영장	서울특별시교육청 ('22.1.1~'24.12.31.) ※ 무상 사용허가
	체육정책과	창체동육문화센터	도봉구청(문화체육과) 위임관리

다. 시립체육시설의 감면사유 중복시 적용범위(안 제10조 관련)

- 안 제10조는 시립체육시설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 이는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두 개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유만을 적용하게 하는 중복적용을 방지하는 조치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u>〈후단 신설〉</u>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1. ----- <u>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u>

라. 명확한 연령 구분(안 제10조 관련)

- 현행 조례(제10조제1호가목)는 개인연습사용료 감면대상을 18세 이하 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시설의 경우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는 12세 이하로 세분화하여 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사용료 부과·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안 제7조제4항)〉

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 인 : 19세 이상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12세 이하

- 이에 동 조례안은 기존에 18세 이하로만 분류하던 것을 18세 이하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한 바, 이용자 구분을 용이하게 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가. <u>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u> (이하 생략)	가. <u>18세 이하인 자(다만, 제7조4항의 구분에 의해 사용료의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세 이상인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현행과 같음)</u>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 감면 포함 (안 제10조 관련)

-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시립체육시설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에 가족 친화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혜택을 수혜받는 타시도와 달리 출산 양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혜택을 주고 있음.
-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평균출산율은 0.78명이자 서울은 0.59명(통계청 2022년 12월 인구동향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예산투입과 인식개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나 다둥이 가정의 생활체육 활동 진흥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6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환희,
송경택,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운영사항 중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서 ‘18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청년 및 노약자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8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호가목)
- 나.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호가목, 안 제10조제2호가목)

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함 (안 제10조제2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18세 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를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 마. (생략)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

-----.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
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
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다. ~ 바. (생략)

3. ~ 5. (생략)

나.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의해 사용료를 차등
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65세 이상인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3020100000020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서상열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선동규 주무관

접수일 : 2023.02.01.

회신일 : 2023.02.14.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사용료감면) 내용 중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사용료감면) 개정 규정에 따라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관련 부서 확인결과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이 다르고 사용료 감면 사례가 드물어 이용자 유형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 이용자 감소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참고 : 서울특별시 공공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현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주 무 관 선 동 규

☎ 02-2180-7953

e-mail : abasiclife@seoul.go.kr

서울특별시 공공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현황

(2019년 ~ 2022년)

직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8)

구 분		입장료(개인연습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단위:천원)			
		2019	2020	2021	2022
잠 실	올림픽주경기장	120	42	12	3
	보조경기장	26	4,517	18,374	12,101
	실내체육관	18,546	6,688	21,385	31,486
	제1수영장	2,246,590	630,966	1,137,634	1,759,023
목 동	주경기장	1,689	1,258	1,634	5,901
	야구장	-	-	-	-
기 타	구의야구공원	-	-	-	-
	신월야구공원	-	-	-	-

위탁·대행 체육시설(7)

소관부서	시 설 명	입장료(개인연습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단위:천원)			
		2019	2020	2021	2022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잠실야구장	-	-	-	-
	목동빙상장	1,686,795	534,949	1,248,111	1,878,177
	효창운동장	-	-	-	-
체육정책과	서경울드컵경기장	-	-	-	-
	장충체육관	-	-	-	-
	고스카이체육센터	275,359	103,912	172,985	395,745
체육진흥과	산악문화센터	-	-	159,603	229,708

기타 체육시설(2)

소관부서	시 설 명	입장료(개인연습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단위:천원)			
		2019	2020	2021	2022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잠실제2수영장	-	-	-	-
체육정책과	창체동문체육센터	2,395,928	36,862	243,009	1,717,196

※ 빈칸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가 없음

※ 자료제공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